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2001. 5.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01년 5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1. 5. 17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이 종전의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보완하고
-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원활한 건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운송사업지원규정의 보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종전의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계속 감면하도록 함.(제10조)

○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제13조)

※ 현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취·등록세 전액면제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신설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제28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보완(제10조)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2000.8.2)으로 시내버스 등 일반노선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내버스 한정면허형태로 운영하던 마을버스를 새로 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 신설,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하여 계속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며,

-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하는 것은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신설은 중부권 화물물류 중심지로 육성할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써
-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 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가 없을 뿐 아니라 이조례 시행 종료 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도 마을버스의 운송사업 등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와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계획을 보면 충청북도 갈산 지구에는 복합화물터미널을, 충청남도 응암 지구에는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할 계획인 바우리도에 건설되지 않는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하는 사유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감면 예상세액 및 효과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